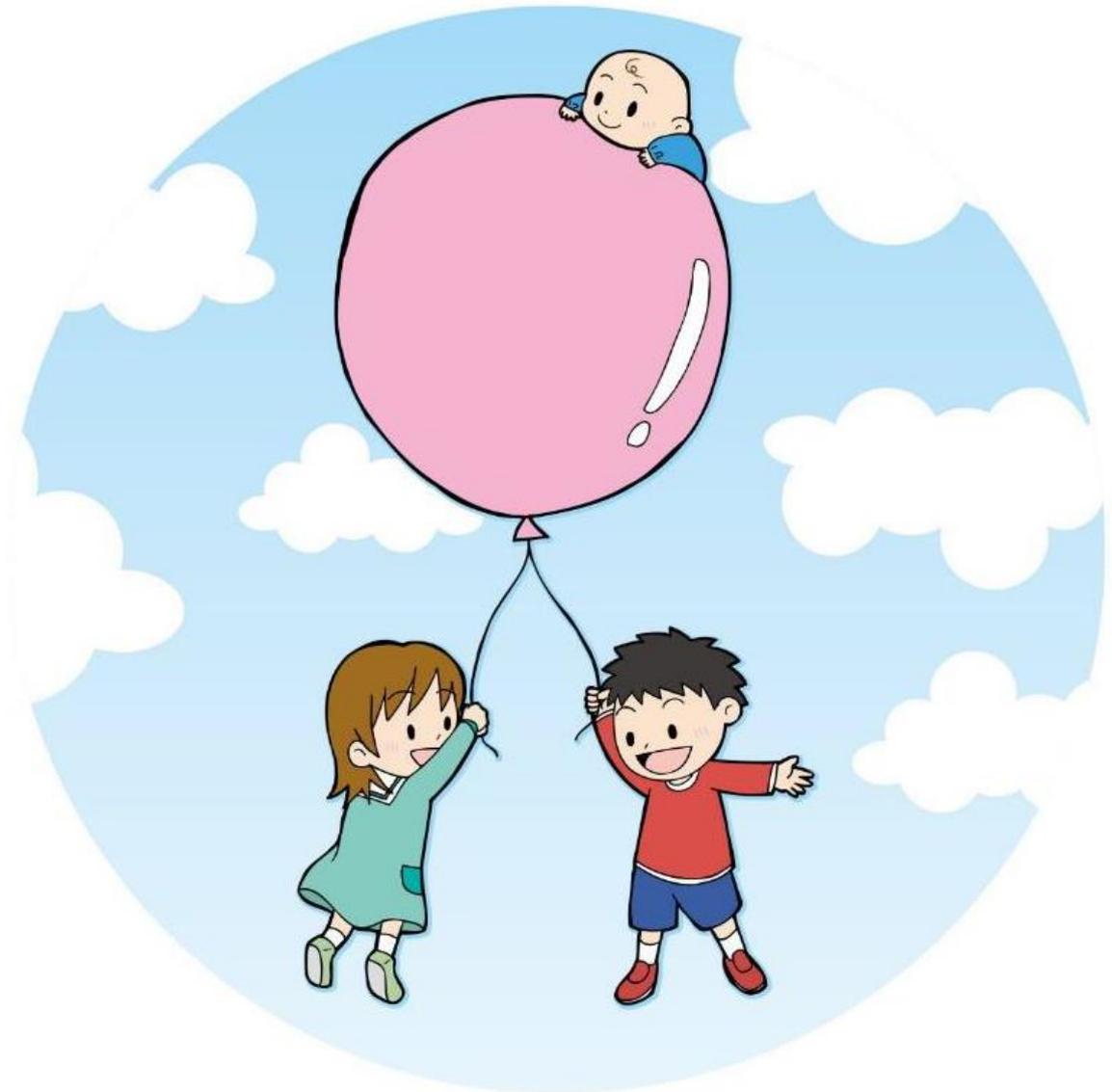


조정심판 등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지불받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조정심판 등으로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결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수속으로서  
‘이행 확보’와 ‘강제 집행’의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법원

## 머리글

조정, 심판, 인사 소송의 판결·화해로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결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의무자)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지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권리자)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속으로서 '이행 확보'와 '강제 집행'이 있으며, '강제 집행'에는 '직접 강제'와 '간접 강제'가 있습니다.

이들 '이행 확보', '직접 강제', '간접 강제'는 모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진행하는 수속입니다. 어느 수속을 취할지는 권리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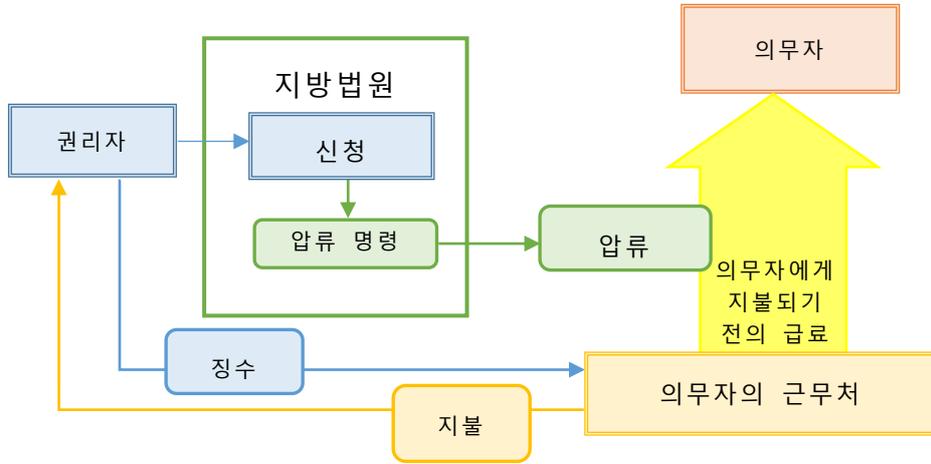
### 1 이행 확보에 대하여(가정법원의 수속)

이행 확보에는 조정, 심판, 판결 등을 한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자에 대해 지불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수속이 있습니다.

이행을 권고하는 수속에 비용은 들지 않지만, 의무자가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2 직접 강제에 대하여(지방법원의 수속)

직접 강제는 의무자의 재산(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하여 그 재산 중에서 지불을 받기 위한 수속입니다. 주된 예인 급료를 압류하는 경우(채권 집행)의 수속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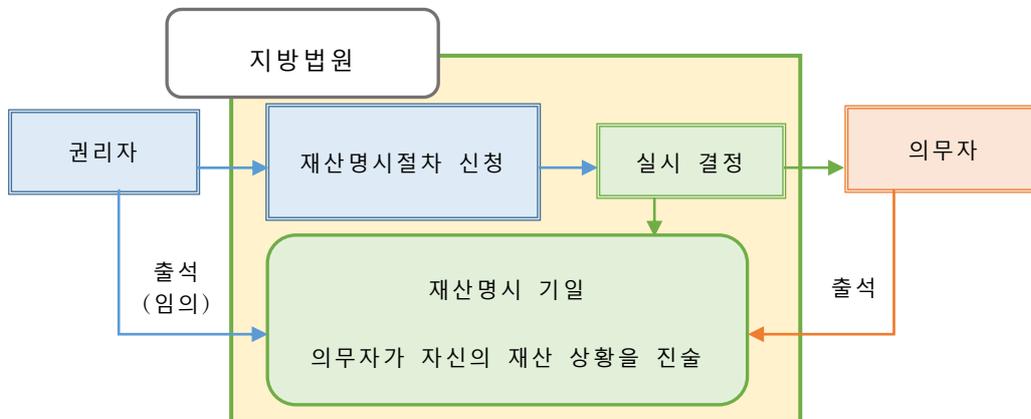


### ① 의무자의 재산 조사

직접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무엇을 압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명시절차와 제 3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취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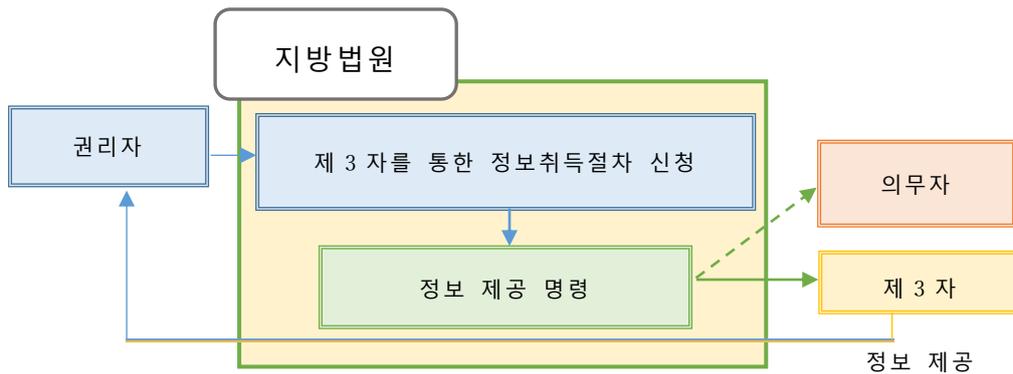
### ○ 재산명시절차

권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에 권리자와 의무자를 소환해 의무자에게 재산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제 3 자를 통한 정보취득절차※

권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등기소 등 제 3 자를 대상으로 의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명령하고, 얻은 정보(예금 종류, 계좌 번호 등)를 권리자에게 송부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등의 경우에는 시구정촌, 일본연금기구 등을 대상으로 직장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자를 통한 정보취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필요한 서류의 준비

직접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는 조정조서, 심판서, 판결서 등의 서면(정본)과 이들 서면이 송달 되었다는 증명서(송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및 우표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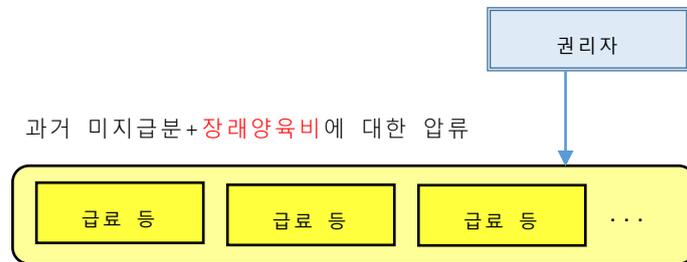
또한 확정증명서와 집행문(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 ① 미래분의 압류

### (1) 내용

압류는 통상의 경우 지불 기한이 지나도 지불되지 않은 분(미지불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미지불분이 있다면 그 금액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차 권리자에게 지불될 예정인, 아직 지불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미래분)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정기적으로 지불 기한이 도래하는 양육비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 등에 관련된 금전채권(혼인비용 분담금, 부양료 등, 부부나 부모 자식, 기타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양에 관한 채권)인 경우 이용 가능하지만, 재산분여나 위자료, 친족관계가 아닌 자의 부양계약에 의한 채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 미래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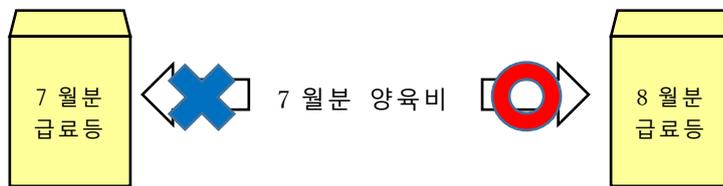
의무자의 급료나 주택 임대료 수입 등 의무자가 계속적으로 지불받는 금전입니다.

※ 예저금 환불이나 퇴직금 지불 등 1 회로 지불이 종료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4) 수령할 수 있는 금전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의무자의 직장 등에서 압류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수령 가능하지만, 장래양육비의 경우에는 각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에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7월분 양육비(장래양육비)는 그 날보다 앞서 있는 7월 25일에 지급된 급여에서 수령할 수 없고, 그 날 이후인 8월 25일 지급된 급여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 (5) 수령 방법

원칙적으로 권리자 본인이 의무자의 근무처 등(제 3 채무자 라고 합니다)에 지불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류를 하더라도 의무자나 제 3 채무자 혹은 법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금전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압류의 범위를 넘어 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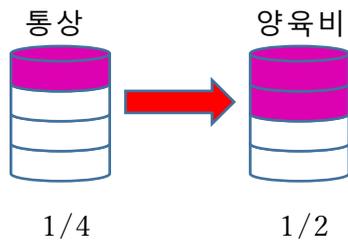
※ 의무자에게 권리자 이외에도 지급해야만 하는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채권자도 이중으로 압류한 경우 제 3 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을 법무국에 공탁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제 3 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이 분배(배당절차)하게 됩니다.

#### ② 압류의 범위

양육비에 대해서는 특례로서 급여

등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원칙적으로 4 분의  
1 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



### 3 간접 강제에 대하여

간접 강제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와는 별도로 간접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경고한 결정을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인 지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법원은 양육비 지불에 대해 정한 조정 조서 , 심판서 ,  
판결서 등 서면에 따라 다릅니다.

간접 강제 결정이 내려져도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나 간접 강제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직접 강제 수속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무자에게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을 때  
등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에 대하여

- 이 리플릿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 이행 확보 신청은 **가정법원** 에서,

- 채권 압류 등의 직접 강제 신청은 **지방법원** 에서 취급하므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법원에서 문의하십시오.
- 간접 강제 신청은 양육비 지불을 정한 서면을 작성한 법원 또는 가까운 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 신청서 용지 등은 아래의 **법원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웹사이트 안내



<https://www.courts.go.jp/>

이행 권고 수속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소재지나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사법지원센터 **법 테라스** 안내

<https://www.houterasu.or.jp/>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는**



0570-078374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7:00

※ 일반전화의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3 분 8.5 엔 세금 별도 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 IP 전화의 경우는 '03-6745-5600' 으로

전화하십시오.

※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문의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무성 홈페이지의 안내 - 양육비 관련 수  
속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j.go.jp/>

(令和3年10月最高裁判所)